



협동조합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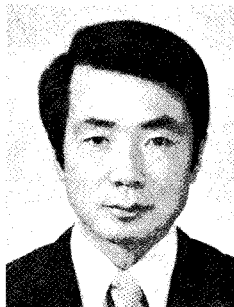
1. 머리말

몇년전 FAO 초청으로 북구라와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핀란드에서 약 1개월간 그곳 낙농과 낙농협동조합을 둘러볼 기회가 있었다. 세계 10여개국에서 20여명이 모인 현지 연수계획이기 때문에 주관기관인 핀란드 낙농협동조합 연차의 계획에 따라 반달이상을 발표와 토론으로 보낸다. 낙농가 현지 시찰을 했을 때의 경험이다. 안내를 받은 한 낙농가에서는 젖소가 30여마리 사육되고 있었는데 축사에 들어가 착유시설 등을 둘러볼 때 농가환경을 설명하는 등 모든 안내를 현지 낙농협동조합직원이 직접맡아 할뿐 농가주인이 보이지 않아 주인은 어디갔느냐는 질문에 「주인낙농가는 4명의 온가족이 하계휴가갔다」는 대답이었다. 우리나라 낙농가들이 흔히 말하는 것처럼 「젖소키우는 사람은 친상을 당해도 갈 수 없다」고까지 하는 바로 낙농가가 휴가갔더니 너무도 의외의 대답이라 처음에는 잘못알아 듣지 않았나 나의 영어실력을 의심할 수 밖에는…!

그러나 뒤따른 조합직원의 설명에 의하면 어느 조합원 낙농가라도 년1회에 한하여 휴가를 신청하면 조합에서 담당직원이 정해지고 그 직원이 시간에 맞추어 사료도 주고, 분뇨도 처리하고, 착유한 우유를 납유까지 해준다는 것이다. 이 한가지만으로도 그나라 협동조합이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가는 보지않아도 짐작이 가지않겠는가? 핀란드만이 아니라 유럽지역의 농민은 협동조합 없이는 농사를 못짓는다고 서슴없이 대답한다는 것이다.

핀란드에서도 낙농가의 90%이상이 협동조합원이고 전체 생산우유의 95%이상을 협동조합에서 집유, 가공, 판매, 수출까지 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내 현실에서 보면 협동조합들이 그정도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기도 하지만 설명 크게 발전되었다손치더라도 어느 농민이 조합을 믿고 착유, 납유까지 위탁하겠



문 기 한

축협중앙회 조사부 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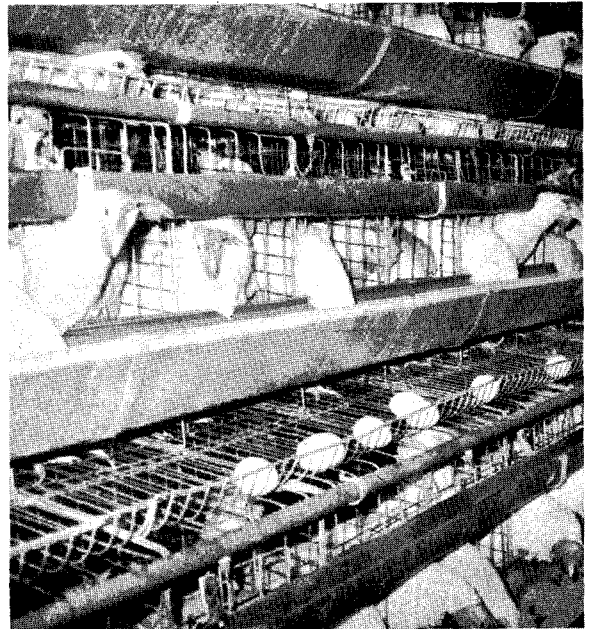
협회의 역할분담

는가 생각하여도 실로 꿈만같은 이야기다. 우리나라에도 대표적 농민단체인 협동조합을 비롯하여 각종협회 그리고 자생단체까지 하면 수많은 양축가 조직이 있다.

이들의 조직현황과 기능을 살펴보고 진정 한국축산의 안정적발전을 위하여 축산협동조합과 협회 상호간 어떻게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인가를 단편적으로 정리해 보자 한다.

2. 양축가 단체의 조직현황

오늘날 우리나라에 현존하고 있는 양축농가의 조직체는 크게 특별법에 의하여 밀받침되고 있는 축산업협동조합과 관련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된 축종별 협회, 그리고 양축가 끼리끼리 모여서 스스로가 조직한 각종 자생단체로 구분되고 있다. 먼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는 1980년 12월에 공포된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업협동조합은 양축가의 자주적 협동조직체로서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양축농가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은 물론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1981년 1월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중심으로 독립적 조직체계를 갖춘다음 그 조직과 기능강화에 팔목할 만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1987년 현재 지역에 따라 시군별로 조직되어 있는 지역별 조합이 139개가 있고 전문축종별로 조직되어 있는 업종조합이 15개가 있어 합계 154개 축협에 18만명의 양축농가가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또한 이들 양축가 조합원과 조합사이에 교량적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축산계만도 1,500여개나 조직됨으로서 양축가 조합원들간의 협동력을 높이고 있다. 이와같은 축협은 그 기능으로 첫째, 생산지원면에서 우량종축이나 사료는 물론 축산기자재까지 공급하면서 각종 기술지원이 더불어 이뤄지고 있으며 둘째, 유통지원면에서는 산지로부터 소비자까지의 계열적 유통조직과 시설을 확보하고 축산물의 원활한 유통으로 수급과 가격안정을 목표로 가축시



장, 도축장, 공판장, 직매장 등의 연계적 기능을 강화하면서 군납은 물론 가공부문에서도 단계적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셋째, 금융지원면에서는 일반농사자금에 비하여 자금단위가 크고 특수성을 갖는 각종 축산자금 수요에 능률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중앙회의 일반금융사업과 회원조합의 상호금융을 년차별로 크게 확충해 나가면서 이와 관련한 축산진흥기금도 관리하고 나아가서 가축의 공제제도 개발에까지도 노력하고 있다.

넷째, 지도교육면에서는 축산에 관한 각종 조사연구, 축산관측, 양축가의 교육훈련, 각종 축산정보의 홍보, 그리고 단위축협의 경영지도면까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다음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축종별로 설립된 협회를 보면 낙농육우협회, 양돈협회, 양계협회가 중심이 되고 있다. 이들 협회의 조직과 활동상황을 보면 협회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지방지역별로 지부조직을 확보하고 천명내외 (1985년말 현재

양계협회 930명, 양돈협회 1,620명, 낙농비육협회 20,000명)의 회원으로부터 일정기간마다 (통상 년1회) 징수한 회비를 주요재원으로 하여 회원에게 각종정보를 제공하는 지도, 조사, 간행물발간보급업무를 주축으로 하면서 축종별로 당면 현안에 대한 대정부 건의활동을 하고 있다. 협회마다 일정하지는 않지만 양돈협회와 양계협회에서는 특정부문에 대해서는 정부 위촉사업을 수행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양축가들 스스로가 끼리끼리 모여 조직한 자생단체로는 낙우회, 계우회, 양돈 연구회 등 적지않은 단체가 있으나 이들 대부분은 특정한 사업은 수행하지 않고 회원상호간에 정보교환과 친목도모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3. 협동조합과 협회의 기능비교

지금으로부터 200여년전 서구라파지역을 중심으로 협동조합운동이 시발된 이래 특히 소규모 분산적인 농업 부문에서는 협동조합을 능가하는 합목적적이면서도 능률적인 농민단체는 없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축산에서처럼 부존자원이 빈약 또 저개발되어 해외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축산여건에서는 그와같은 타당성이 더욱더 인정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축협이 복합적 협동조합 성격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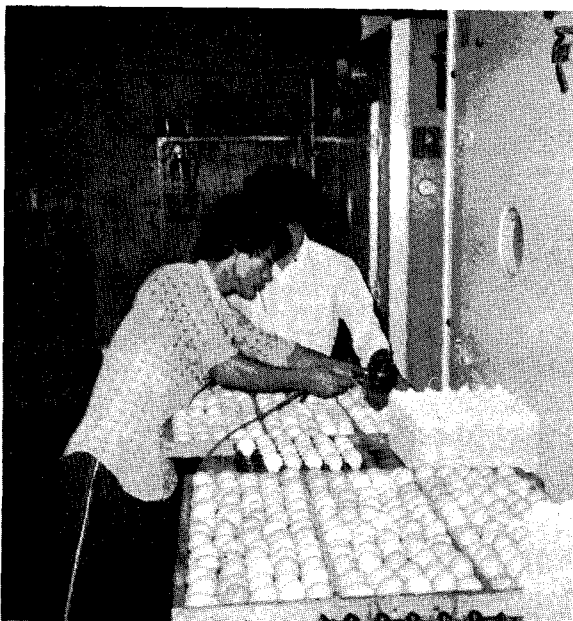
갖는 농협중앙회의 특수조합으로 예측되어있을 때 이질적 소의감속에 축종별로 각종협회가 자연스럽게 조직된 이래 축협중앙회가 설립된 이후에도 한편으로는 지역조합으로부터의 이질감 때문에 또한편으로는 축산업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축종별보다는 기능별 분화속에서 끼리끼리의 협회활동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축산부문 양축가 단체의 2대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축산업협동조합과 축종별 협회간의 조직과 기능을 비교분석해 보자.

첫째, 조직의 성격면에서 보면 협동조합은 소규모 양축가들의 시장능력을 강화하여 이를 소득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공동구매와 공동판매를 주축으로 하는 경제단체이면서 이익단체인데 반하여 협회는 회원상호간의 친목과 정보교환을 주축으로하는 비경제적인 친목단체라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협동조합은 법인격을 갖고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양축을 제외하고는 모든 양축가가 조합원의 자격을 갖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규모간 차이가 광범위한 수밖에 없어 친목이 거의 배제된 순수한 경제단체임에 반하여 협회는 규모의 균일화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통상 기업양축가를 중심으로한 대규모 양축가들로만 구성되는 비경제단체로 정의되는 것이다. 이것은 회비의 징수나 회비를 바탕으로 각종서비스를 환원하는데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둘째, 단체의 기능을 밑받침하는 재원의 조달을 보자. 협동조합을 광범위하게 차이가 나는 양축규모를 갖는 조합원들이 자기능력에 알맞은 만큼의 출자금을 가입이후 자발적으로 조성하게 되면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하여 사업에서 얻어진 최소한의 과실금은 조합원의 출자수에 따라 개별조합원의 이용고에 따라 다시 환원배당하게 되는데 반하여 협회는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균일하게 회비를 납부하게 되면 해당기간동안 그 회비재원을 바탕으로 활동을 하게되고 다음기에는 다시 회비를 징수해야 하는 소모성회비를 재원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데 큰 차이가 있다. 출자금은 한번 내거나 추고 내거나 지분이 남게되고 그것에 기준하여 배당을 받게되는 사업의 기금성격인데 반하여 회비는 기간중 써버리는 비용의 성격을 갖게되는 것이다.

셋째로, 단체의 기능을 비교해 보자.

협동조합은 기본적 성격부터가 경제적 사업단체이기



때문에 조합원의 개별경영은 물론 생활경제와도 관련되는 각종사업을 조합원의 경영과 결합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무제한으로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생산자재의 공동구매 제조공급과 공동판매 그리고 필요할 경우 생산품을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높여 판매하는 것은 물론 창고, 운송 등 각종 이용사업, 자금조달을 위한 금융사업 심지어 생활경제에 필요한 생활물자 공급분야까지 어떤 종류의 사업이든지 그것이 조합원에게 이익을 주는 한 제한없이 수행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협회는 운영의 재원이 소모성 회비인 이상 경제적상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만약에 협회가 경제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회비가 아니라 주식회사식으로 별도 재원조달방법이 강구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협동조합을 경제적 사업단체인데 반하여 협회는 비경제적 친목단체의 성격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4. 협동조합과 협회의 협력방안

이상에서 비교해본 바와 같이 협동조합과 협회는 분명한 성격과 영역이 설정되어있기 때문에 존립에 대한 타당성은 뚜렷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축산업처럼 부존자원이 빈약한데다 그나마 개발이 충분하지 못하여 종축으로부터 사료원료곡 그리고 일부기재까지 수입할 수밖에 없어 해외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축산여건에서 두종의 단체간에 경쟁적인 활동은 우리나라 축산업발전에 절대위해적일 뿐이기 때문에 상호보완적 협력방안이 다양하게 지속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첫째, 조직면에서 협회는 기업양축가를 주축으로 회원을 확보하고 협동조합은 그이하 전부업 양축가를 주대상으로 해야 하겠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협회는 기업양축가의 대변기구가 되고 협동조합은 그이하 소규모 양축가의 대변기구로 분명한 위치를 잡게되는 것이다. 둘째, 협회는 앞에서 상술한 바와같이 기업양축가 즉 자기대로 경영능력과 시장능력 그리고 기술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는 회원들의 조직체이기 때문에 협회에서 할 수 있는 업무능력은 자연히 대정부 건의활동, 정보제공사업 그리고 회원상호간의 친목도모 사업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사업은 시장 능력이나 기술능력이 미약할 수밖에 없는 소

규모 양축가를 구성원으로하는 협동조합에서 해야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기업양축가의 단체인 협회에서 회원들의 경영능력이나 기술능력을 협동조합을 통하여 소규모양축가에게 보급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도 상호협력방안에 하나가 될 것이다. 예컨대 대규모 기업양돈기에서 생산되는 우량종축을 협동조합의 조직체계를 통해서 조직적으로 보급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처럼 부존자원이 그나마도 충분히 개발되지 못한 나라일수록 전 부업양축은 전 부업양축대로 유리성이 있고 기업양축은 기업양축대로 유리성이 있기 때문에 이들 상호가 경쟁적이거나 배타적일 수는 없는 것이고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되는 입장에 있다. 그렇다면 이들을 각기 구성원으로하는 협회와 협동조합이야말로 상호보완적 관계에서 다같이 한국축산의 장래를 책임져야 할 것이다.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으로 중앙단위, 도단위, 군단위별로 축종에 따라 상호협의기구를 상서하여 야기되는 현안문제에 관하여 그때 모아서 협의 해결하는 방안이 있을 수도 있고, 현행 축산업협동조합법에 규정되어 있는대로 각축종별 협회가 축협의 준회원으로 가입하여 상호협력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5. 맺는말

해외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축산여건에서 설령 축산물을 수입해오지 않는다손치더라도 국내에서 생산한 축산물의 자급도가 매우 낮은 현실에서 같은 축종의 수급안정과 장기적인 발전을 걱정해야 하는 입장에서 협회와 협동조합이 각기 자기조직의 설립목적에 따라 상호 경쟁적 배타적이기보다는 보완적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은 강조하 필요도 없을 것이다.

최근에도 양돈불황에서 두수증가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면서 매도하는 류의 현상은 시급히 불식되어야 할 것이다.

협회와 협동조합은 분명히 상대를 그늘지우게 하지 않은 범위에서 엄연히 설명이 각기 있다. 그렇다면 각기 주어진 영역에서 다함께 한국축산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자기몫을 상호보완적 협조적 환경속에서 책임진다는 분명한 자세가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본문]**